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접대비 세제는 어떻게 다를까?

(조세연구원, 2006)

접대비의 정의 및 범위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접대비 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지출한 오락, 접대, 금품의 제공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와 기타 유사비용을 구분하기 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접대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다른 서구국가들의 경우에는 지출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출의 목적이 오락, 향응, 레크리에이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모두 entertainment expenses에 포함시키고 있다.

접대비의 손금인정 여부 비교

일부 국가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손금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영국), 대부분 서구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미국).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접대비 해당 여부보다는 지출된 접대비가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접대비 관련 세제 비교>

구 분	개념 및 범위	손금인정 여부	손금산입 요건	한 도
한 국	접대비 및 교체비·사례금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지출액 전액 손금 인정	별도의 요건 없음	기본금액 +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미 국	거래상대방 및 임직원에 대한 접대, 오락의 제공 및 선물의 증정	entertainment expenses 50%, gift 1인당 25달러 이하	사업과 관련된 지출	한도없음
일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접대, 위안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한해 지출액의 90% 손금인정	별도의 규정 없음	연간 400만엔
영 국	-	손금불산입	-	-
독 일	사업상의 이유에 의하여 지출하는 접대 관련 비용	지출액의 70% 손금 인정	적절한 지출, 장부상 증빙	한도없음
뉴질랜드	사업상의 목적으로 유흥·오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접대비의 성격에 따라 100% 또는 50%	사업상의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	한도없음